의 안 번 호	제106호
의결 연월일	2020. 9. 2.

-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8월 25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0년 8월 25일

다. 상 정 일 자: 2020년 9월 02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O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행복 키움수당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~2조)
 - "아기"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.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 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